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7. 25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8명

○ 발의일자: 2023. 5. 26.(금)

○ 회부일자: 2023. 5. 26.(금)

○ 상정 및 의결

- 2023. 6. 12.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**(보류)**
- 2023. 7. 25.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**(수정가결)**

2. 개정이유

○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,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(안 제4조)

다.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○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○ 입법예고(2023. 5. 26. ~ 2023. 6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축하금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(19세 이상 39세 이하)부부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청년부부의 달서구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인구유출 방지와 결혼친화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03년 30만 건에서 2022년 19만 건으로 11만 건이 감소하였고, 조혼인율(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)은 6.3에서 3.7로 2.6이 감소하고,

○ 혼인연령은 2003년 남 30.14세, 여 27.27세(대구 남 29.90세, 여 27.33세)에서 2022년 남 33.72세, 여 31.26세(대구 남 33.63세, 여 31.22세)로 각각 3.58세와 3.99세가 증가하여,

○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2000년 1.48명에 비해 0.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.

○ 이 조례안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초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고, 달서구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서 각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두고 있고,

○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
○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,

○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의 변경과 결혼축하금의 신설은 그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삭제하고, “결혼축하금을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”으로 하며,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혼인신고일로부터”를 “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후단 중 “부부”를 “청년부부”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안 제2조 중 “2024년 1월 1일 이후”를 “2023년 8월 1일 이후”로 한다.

현행·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	제2조(정의) <개정안과 같음>
<신 설>	② "청년부부"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를 말한다.	
제4조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) 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	제4조(결혼친화도시 조성) ① ---------- 결혼친화도시 ----------	제4조(결혼친화도시 조성) <개정안과 같음>
1. 미혼남녀 매칭 사업	1. ------ 만남주선 ----------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제5조의2(결혼축하금	제5조의2(결혼축하금

	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다)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다)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
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<삭 제>
	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<삭 제>
	3. 그 밖에 구청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결혼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부	<삭 제>
	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	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

	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.	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청년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.
	<신 설>	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<신 설>	제5조의3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.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 3. 결혼축하금 환수	제5조의3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<개정안과 같음>

	방법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<신 설>	제5조의4(환수)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	제5조의4(환수) <개정안과 같음>
	부 칙	부 칙
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<개정안과 같음>
	제2조(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.	제2조(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.